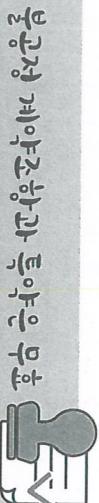




## 7 서울시 「대금비바로」를 아시나요?

### 불공정 피해 예방은 표준화도급계약서 사용으로...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화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불공정 피해를 예방합니다.



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불인정,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및 정당한 이익침해 등 당시(자) 일방에게 한자하게 불공정한 계약조항과 특약은 무효입니다.

###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!

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

-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·변경공사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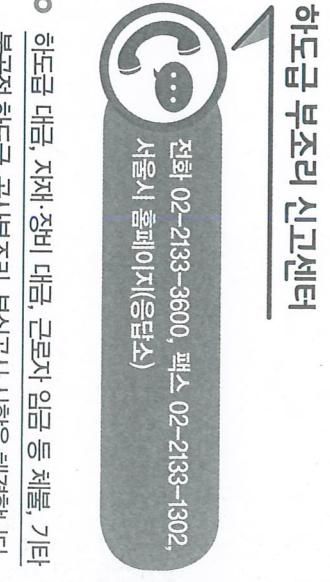
### 처벌규정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25조의3

- 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(설급)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(하도급 금액 2배 범위)이 부과 됩니다.

###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합니다.

-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, 근로자 임금, 자재·장비 대금 등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 되도록, 지금내역을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



### 하도급 법률 상담센터

전화 02-2133-3008, 팩스 02-2133-1302,  
이메일 hoinin@seoul.go.kr

- 공사비 미지급, 부당한 감액·위탁취소, 불법·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전문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### 지급 대상을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체불 피해를 예방합니다.

- 기성금 지급시 근로자, 건설기계 대여업자, 자재납품 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, 대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.

## 8 하도급 부조리는 서울시에 신고하세요!